직인생략

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정책국장 최윤배(6530)/ 정책팀장 박우민(6532)/ 대리 김철욱(6535)/ E-mail: leo0817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625-4751호

시행일자 2017. 8. 21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2017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알림

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-3578(2017. 8. 9.)

2. 위 호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'약사법' 제38조, 제42조 및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48조, 제60조 및 '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'(식약처고시, 제2016-94호)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%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온 바,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주요 내용 -

가. 대상품목: 1,997 품목
나. 차등기준
  ○ 연간 제조·수입량의 3% 이상 공급 : 652 품목
  ○ 연간 제조·수입량의 5% 이상 공급 : 1,223 품목
  ○ 연간 제조·수입량의 7% 이상 공급 : 122 품목
다. 적용시기: 2017년

붙임 :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※ 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 개원의협의회장)